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05년 3월 4일(충청북도교육감)

나. 회부일자 : 2005년 3월 7일

다. 상정일자 : 2005년 3월 18일(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교육국장 노재전)

가. 제안이유

○ 학교회계제도의 시행과 관련법규의 개정에 따라 관계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기하기 위한 것임

나. 주요골자

○ 학교회계제도의 시행에 따라 공립의 각급 학교 학교회계 소관 물품을 관리대상에 추가하고(안 제1조),

○ 물품매입 등의 요구에 있어 "서무주무자"를 "업무주무자"로 하였으며(안 제8조 및 제9조),

○ 중요물품의 범위를 물품당 단가 50만원 이상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물품으로 하고(안 제11조),

○ 행정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불용품의 소요조회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함(안 제16조제4항)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중갑)

○ 금번 제출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학교회계제도의 시행(2000. 1. 28)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리대상물품에 학교회계 소관 물품을 추가하는 등 관계규정을 정비하고,

-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 "업무주무자"의 명확한 의미,

- 그리고, 현행 각 기관별 공문발송을 통한 소요조회를 인터넷을 통한 소요조회 방식으로 변경할 경우, 소요조회의 실효성 여부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가. 수정이유

○ 물품 매입요구와 관련하여 용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 상위 법령의 개정 후 미정비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안 제8조 및 제9조중 "업무주무자"를 각각 "각 부서의 업무 책임자"로 하고,

○ 제16조제3항1호중 "직할시"를 "광역시"로 함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첨부서류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년월일 : 2005년 3월 18일
제 안 자 : 이기동 의원외

□ 제안이유

○ 물품 매입요구와 관련하여 용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 상위 법령의 개정 후 미정비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

□ 주요골자

○ 안 제8조 및 제9조중 "업무주무자"를 각각 "각 부서의 업무책임자"로 하고,

○ 제16조제3항1호중 "직할시"를 "광역시"로 함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8조 및 제9조중 "업무주무자"를 각각 "각 부서의 업무책임자"로 하고,

○ 제16조제3항1호중 "직할시"를 "광역시"로 한다.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교육비특별회계 소관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교육비특별회계 및 공립의 각급 학교 학교회계 소관물품	제1조(목적) (개정안과 같음)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 수리, 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과장(주관과장이 없는 청·소는 서무주무자)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경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 수리, 제조품의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 . 업무주무자.....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 . 각 부서의 업무책임자..... ....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주관과장(주관과장이 없는 청·소는 서무주무자)이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3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 ②(생략)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업무주무자 .... ② (현행과 같음)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각 부서의 업무책임자..... .... ② (개정안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1조(중요물품의 범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은 물품당 단가 50만원이상의 물품으로 한다.	제11조(중요물품의 범위)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물품.....	제11조(중요물품의 범위) (개정안과 같음)
제16조 (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② (생략)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부각부처·특별시, 직할시 및 도에 소요조회는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10백만원 이상인 경우 2. (생략)	제16조 (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③ (현행과 같음)	제16조 (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② (개정안과 같음) ③ .... 1. .....광역시 .... 2. (개정안과 같음)
<신 설>	④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을 대상으로 조달청 또는 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개정안과 같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안과 같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교육비특별회계 소관물품"을 "교육비특별회계 및 공립의 각급학교 학교회계 소관물품"으로 한다.

제8조 및 제9조중 "서무주무자"를 각각 "각 부서의 업무책임자"로 한다.

제11조중 "물품당단가 50만원이상의 물품"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물품"으로 한다

제16조제3항1호중 "직할시"를 "광역시"로 한다.

제1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을 대상으로 조달청 또는 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교육비특별회계 소관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교육비특별회계 및 공립의 각급 학교 학교회계 소관물품 ---------- ---------- ---------- -----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 수리, 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과장(주관과장이 없는 청·소는 서무주무자)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경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 수리, 제조품의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 ---------- ---------- 각 부서의 업무책임자---------- ---------- ---------- ---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주관과장(주관과장이 없는 청·소는 서무주무자)이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3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 ②(생략)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각 부서의 업무책임자---------- ---------- ---------- ---------- ---------- ---------- ---------- ---------- ②(현행과 같음)

현 행	개정안
제11조(중요물품의 범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은 물품당 단가 50만원이상의 물품으로 한다.	제11조(중요물품의 범위) ---------- ----------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물품 --------
제16조 (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②(생략)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부각부처·특별시, 직할시 및 도에 소요조회는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10백만원 이상인 경우 2. (생략) <신 설>	제16조 (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②(현행과 같음) ③---------- ---------- ---------- 1. ----------광역시------- ---------- ---------- ----- 2. (현행과 같음) ④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을 대상으로 조달청 또는 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행할 수 있다.

관 계 법 령 발 췌

□ 초·중등교육법

제30조2(학교회계의 설치) ①국·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회계를 설치한다.

□ 지방재정법

제104조(물품증감과 현재액의 총계산서의 작성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요물품에 대하여 직전 회계연도의 물품증감과 현재액의 총계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조(교육·과학 및 체육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이 영에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 또는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교육감"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행정자치부령"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본다.

제130조(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의 총계산서의 작성) ①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물품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계와 중요한 기구로 한다.

②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증감 및 현재액의 총계산서의 서식과 작성방법등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①지방자치단체는 대별하여 다음의 2종으로 한다.

1.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